

July 28,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5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7. 20. ~ 7. 24.)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 7. 28. 발표된 주요 정부부처의 대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2020. 7. 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풍향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선정, ②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보급, ③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완료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 추진



[참고자료]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 개정 및 공포

2020. 7. 20.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 개정안을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 기재, ② 즉시 해지 사유 중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로 추가, ③ 즉시 해지 사유 중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참고자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및 전문



[과기부1] 데이터 분야 사업설명회 개최

2020. 7. 20.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020년도 7개 추경 산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올해 약 385억원, 3년간 약 735억원 지원, ②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총 150종(과제당 19.5억원)의 데이터셋 구축 지원, ③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AI)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이터가공바우처 지원 사업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뉴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기업과 함께



[과기부2]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 발표

2020. 7. 23.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하여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 추진, ② '27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발사 및 이를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 제공, ③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7. 22.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 ②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확대, ③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면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토 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 발표

2020. 7. 22.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위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 확충, ②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기차 부품기술,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등에 약 1,300억원 지원, ③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대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박차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0. 7. 22. 경제위기를 지원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②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중기부·기재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발표

2020. 7. 23. 제조혁신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스마트제조 2.0)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22년도), ②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연동할 경우 그 이용료만큼 기업부담금 감면(최대 3년 한도), ③ '22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 투자 확대('20년 1,000억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금융위·금감원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20. 7. 22. 개정 신용정보법 내용 등을 반영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추가, ②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③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매입 약정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2020. 7. 24.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한 금융정책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해외사례 조사, 시장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 및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 검토('20년 하반기), ②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용 및 핀테크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20년 하반기), ③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 실명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 발표('20년 3분기) 등이 있음

[참고자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수정



*** 2020. 7. 28. 주요 정부부처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
금융위		과기부	
금감원		공정위	
산자부		국토부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간섭금지 규정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4호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동일한 취지의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함(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 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내용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및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91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이에 일정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원욱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